

수 신 각 언론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발 신 (문의 :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10-8873-8394)
제 목 8/11(금) 오전 11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
정 청원 기자회견
날 짜 2023. 8. 11.

보 도 자 료

8/11(금) 오전 11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매년 700개 넘는 ‘산재 다발 사업장’, 구직자들은 알 수 없어
- 산재 다발·은폐 기업 채용공고 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 구직자는 안전한 일자리 찾고, 기업은 산재 예방 노력하도록 유도

1.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8월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입법 청원 소개 의원으로 함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한다.
2. 현재 고용노동부는 매년 한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연간 2명 이상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한 사업장·비슷한 규모의 동종 업체에 비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723개에 달하는 명단이 한꺼번에 공개되다 보니 몇몇 대기

업의 이름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위험한 사업장이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정작 구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이 안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한다는 명단공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3. 정보공개센터는 채용 정보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표 대상인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산재 은폐 사업장 등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 입법 청원을 제출한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인 임금체불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낼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그 사실을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공개 의무를 산업재해가 일어난 기업까지 확대하여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많은 구직자와 기업이 채용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는 만큼 구직자가 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을 쏟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입법 청원 소개 의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이은 산업재해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입법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 지난 해 기업의 중대재해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www.nosanjae.kr)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 순서

사회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발언1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발언2 :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발언3 : 용혜인 국회의원

※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회관 220호실 국회민원지원센터로 이동하여 입법 청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전문

[청원의 취지]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03년부터 매년 산재 다발 · 은폐 사업장 명단과 사고 발생 건수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산재 은폐가 매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임금체불 사업자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원활한 고용을 위해 임금체불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이러한 선례에 따라, 그동안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산재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할 의무를 두어 구직자가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원활한 구인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에 보다 힘을 쏟을 유인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청원의 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함(제19조 6항 각호 개정)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함(제25조 각호 개정)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제2호를 제3호로,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가 구인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신설)
3.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신고·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2호 → 3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호 → 4호)

제25조의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구인자가 구인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인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호 → 4호)

직업안정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설명자료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과 사고발생 건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공표하라는 조문을 두어(제13조 및 시행령),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의 입법 취지는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의안번호 161500](#), 위원회 수정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공표제도 역시 '사업장의 위험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부실을 취업자나 구직자들에게 정보제공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2021년 1월 5일, 제383회-법제사법소위제4차회의 박주민 위원 발언 내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 및 재판 등 제도 운영 상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이 공표 되는 시점은 실제 사망사고가 일어난지 2~3년 후에야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수백개의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2022년 공표 대상 사업장 723개)이 한꺼번에 공개되다보니 몇몇 대기업의 이름들만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질 뿐, 대다수 사업장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법 시행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공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법 취지에 따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취업자와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직자들이 보다 쉽게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내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인자가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이거나 산업재해 은폐 전력이 있는

사업장일 경우, 구직자가 구직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구인자 역시 산업재해 예방에 힘을 쏟을 유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잡코리아’, ‘사람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공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제도를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들은 임금체불사업주가 구인을 할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둔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제25조)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선례에 따라, 직업안정법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명단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2년부터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산업재해 사고 건수와 재해 날짜, 장소, 재해 형태, 이후의 행정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http://nosanjae.kr) (nosanjae.kr)를 제작하고, 워크넷의 구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의 구인광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업안정법 개정과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구인공고를 낸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대상일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사실을 구직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 청원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cfoi@opengirok.or.kr / 010-8873-8394)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